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주요 진상규명과제 총론

최희천 박사

2023. 10. 23. (월)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핵심 준거 기준

기존조사 한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파악되지 않음

기존조사 한계

조사목적과 문제의식에 따라 특정 사안에 치중

추가조사 기준

추가조사의 핵심 준거기준: 인명피해 최소화

추가조사 기준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개념에 부합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파악되지 않음

- 진상규명의 목적은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유사한 참사를 예방하고 (유사한 참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임
- 첫 단계는 참사의 발생과 전개과정에서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 기존 조사(특수본, 검찰, 국정조사 등)는 필요한 사실관계의 극히 일부 분만 확인되었는데, 문제와 개선안도 모호하게 기술될 수 밖에 없음
- ✓ 예) 참사 당일 현장에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몇 명이 있었고, 어떤 임무를 갖고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등 현장에서의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았는데, 현장 대응의 문제점을 도출한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려움

조사 목적·문제의식에 따라 특정 사안에 치중

- 기존의 조사들은 각자가 가지는 특정한 목적이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관점들이 다르고 종합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 특수본·검찰 조사는 현재의 법 체계를 완전한 것으로 이해하여 희생이 확대된 실제적 원인보다 각각의 행위들을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었고,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주제들에 치중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또한 형사사건의 논리구조처럼 인과관계의 엄밀성을 중요하게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법적 프로세스는 희생자들보다는 처벌할 수 있는 대상에게 집중

조사 목적·문제의식에 따라 특정 사안에 치중

- 국정조사는 희생이 확대되었던 과정과 관련하여 응급조치나 이송 등 다수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종료
- 또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정치적 공방이나 법적 책임과 연계되어 출석자들의 답변 또한 추상적이고 방어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피해자들의 희생이나 재난관리 시스템의 작동을 검토하는 데 매우 부족하였음
- 기존 조사로는 재난의 기록을 사회적 차원에서 남길 수도 없으며, 일관된 관점이 없기 때문에 부분들을 종합하더라도 중심을 잡기도 어려움

향후 조사의 준거기준: '인명피해 최소화' 기여

- 이번 참사는 여러 기관들이 동시에 관여되어, 시스템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대응과 기관 간의 연계를 동시에 파악해야 함
- 기존 조사들이 검토한 수많은 개별적 사안들을 명확한 문제의식과 일관된 관점으로 묶어내지 못할 경우, 파편화된 내용들의 단순 취합이 됨
- 모든 원인 규명 활동의 최종 목적은 또 다른 참사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모든 기관(책임자)의 활동들은 “피해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가 조사 내용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개념 부합

- ‘피해최소화 기여’ 기준에 따라 조사된 사항들은 재난관리 시스템의 개선에도 부합하여야 함
- 국제적 기준으로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개념과도 부합하게 추진해야 함
-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점에 따라 추가조사과제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동일한 관점으로 실제 조사 진행을 염두에 두고 ‘정부 기관별 주요 진상규명과제’를 세부적으로 도출·정리함

추가조사과제의 구성 및 개요

예방·대비

기존 인파사고 관리체계 및 전년도까지 헬러윈 축제 대비체계

대비

10.29. 헬러윈 축제 인파사고 위험 예측·사전 인지 및 대비

예방·대비

참사 당일 현장위험이 무시, 간과된 과정과 이유

대응

희생자들의 피해가 확대된 과정과 이유

대응

정부 기관들의 각 대응 활동(피해 최소화 관점)

대응(긴급구호)

희생자들의 사망판정, 임시안치, 장례식장 이송, 신원확인 과정

대응·복구(회복)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권리침해

복구(회복)

지역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기존 관리체계 및 전년도까지 핼러윈 축제 대비체계

- 인파사고 전반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존 관리체계 및 전년도까지 핼러윈 축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22년도 행사에 대비한 각 기관들의 '준비의 적정성'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음 (관리 체계, 기존 매뉴얼·지침, 대비계획, 기존 인파사고의 조사·대책 등)
1. 각 정부기관의 인파사고(전반) 관리체계 및 대비 현황
 2. 전년도(2021년)까지 이태원 핼러윈 축제 대비 계획
 3. 2022년도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 계획 검토

10.29. 인파사고 위험예측 · 사전인지 · 대비

- 각 기관은 인파운집은 예상했지만 인파사고를 예상하지 못했고 인파 관리 계획도 없었다는 입장인데, 인파사고의 위험이 어떻게 간과되었고 범죃·집회에 밀려 인력 배치 등의 대비계획이 미비했는가와 실제 당일의 인력배치 등의 사실확인 필요 (각 사항 진위여부 확인 선행)
1. 각 정부 기관의 10.29. 인파사고 위험의 사전 파악(예측) 과정
 2. 인파사고 위험이 무시·축소된 채 수립된 인력 배치 계획
 3. 확인할 수 없는 10.29. 당일 각 기관의 실제 인력 배치와 활동

참사 당일 현장 위험이 무시, 간과된 과정과 이유

- 오후 압사사고의 위험이 급증했지만, 당일 현장에 배치된 인력들과 112 신고 등이 있었음에도 각 기관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 (당일과 전일의 112 및 119 신고 등도 전부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확인 필요)
 - 참사 현장 이외에도 용산구청의 전단지 제거나 주차단속, 경찰의 코드제로 대처 과정 등 위험 급증에 대한 각 기관(본부)의 대처가 없었던 세부 과정과 이유도 조사
1. 참사 당일 인파가 급증하는 현장에서 직원들의 활동 내역 (~22:14경)
 2. 인파 급증 기간, 현장 이외 각 기관에서의 활동내역 (~22:14경)
 3. 인파 급증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처 활동 내역 (~22:14경)

희생자들의 피해가 확대된 과정과 이유

- 재발방지를 통한 인명피해 방지가 조사의 최종 목적이므로 희생자들의 피해가 확대된 과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거의 없음. (향후 조사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함)
- 피해자 구조와 응급조치가 지연되며 골든타임이 소모됨. 영국 힐즈버러 참사 조사 결과처럼, 얼마나 살릴 수 있었는지 각 시간대별로 파악 필요
- 피해확대 과정이 정리되어야 각 기관들이 (시간대별로) 취하였던 조치들이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실제적인 판단할 수 있음. 단순히 법령상 임무를 OX처럼 단순 체크하는 것을 넘어 제도의 문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조사라는 사회적 기능에도 부합

희생자들의 피해가 확대된 과정과 이유

- 피해자들이 해밀턴 골목에 갇혀 있었던 때부터 마지막 구조된 시점까지의 상태나 현장에서 받았던 응급조치도 최대한 정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거의 없음. 영상자료, 피해자·목격자·담당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 필요
 - 현장의 긴급구조와 응급(의료) 조치에 대해서는 소방 이외 기관들은 국정조사에서도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음
1. 참사 당일 생명 위협이 증가한 상황과 피해자들이 받았던 응급조치
 2. 현장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소방, 복지부, 보건소 등)
 3. 긴급구조·응급의료 지연 원인인 도로통제 지연 (경찰, 행안부, 소방 등)

정부 기관들의 각 대응 활동(피해 최소화 관점)

- 각 기관들의 현장대응 활동이 실제 재난 피해를 얼마나 줄이는데 기여했는가를 중심으로 면밀히 조사해야 함. 시간상으로는 10시 15분 이후
- 현장의 경우, 소방과 각 기관의 긴급구조 활동, (경찰 등의) 도로통제와 기동대 출동, 소방·복지부·보건소(구청) 등의 응급의료가 주요 사항임.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경찰의 배치 현황이나 임무, 구체적 활동 내역의 자료조차 구하지 못하였고, 응급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알 수 없음
- 서울시·행안부·국가위기관리센터가 각 기관들의 소통·정보공유 등 대응활동을 얼마나 촉진시켰는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도 확인, 판단하여야 함. 하지만, “보고”, “검토”, “내용을 통보받았다”는 등 포괄적으로 답변·기재된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

정부 기관들의 각 대응 활동(피해 최소화 관점)

- 현재 조사 결과로는 각 기관들의 현장대응 활동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참사의 기록이나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기존 진술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과 함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파악된 각 기관과 책임자(담당자)의 활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활동에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증하여야 함 (지시 등이 혼잡성을 증가시키지 않았는지 등)
- 현장에서의 대응활동과 함께 본부의 역할과 활동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피해를 줄이는 데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함
- 개별 기관들의 활동은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재구성되고 검토되어야 함(재난안전통신망 포함)

희생자 사망판정·임시안치·장례식장 이송·신원확인

- 피해자들의 사망 판단과정, 이태원 173 임시영안소로 이송되는 과정과 그 안에서의 조치, 현장에서 순천향대 병원 등으로의 이송, 다목적 체육관으로의 이송, 장례식장으로의 이송 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유가족들은 알 수가 없어 참사 직후 거리를 찾아 헤매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음
- 가족들이 현장에서 희생자와 함께 있었는데 왜 밤새 헤매야 했는지, 가까운 병원으로 사망자 대다수 이송되었는지,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된 시신이 왜 다시 체육관으로 이송되었는지, 왜 희생자들은 연고도 없는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되었는지, 희생자 상황에 대해 관할 공무원이나 경찰서가 알고 있는지 등도 알려지지 않음
- 이상의 사항들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함

희생자 사망판정·임시안치·장례식장 이송·신원확인

1. 희생자의 현장 응급의료 중단, 사망 판정 및 임시 안치의 과정 및 이유
2. 이태원 173 임시영안소로 이송되는 과정과 임시영안소에서의 조치
3. 순천향대병원 등 병원 이송과 사망 판정
4. 다목적 체육관에서의 조치 및 각 병원 장례식장으로의 이송
5. 희생자들의 구체적인 이송과정 추적 필요성
6. 유가족 통보 및 검시 과정에서의 문제점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권리침해

- 이번 참사에서 피해자에게 참사의 책임을 돌리거나 2차 가해가 나타남.
-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재난·참사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글로벌 기준에 입각하여 인권기반 접근 관점에서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의 빠른 사회 복귀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함
- 특히, 유가족들은 핵심적 이해관계자로서, 정부의 프로세스에 부합하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시민·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2차 가해가 조장되었거나 방치되었던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함

피해자의 2차 피해 · 권리침해 및 지역회복

1. 참사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려는 관점
2. 희생자 유류품 인계 문제
3. 피해자 간 소통과 연대가 저해되었던 사항(정보 제공 거부 등)
4. 합동분향소 설치 등 애도와 추모
5.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
6. 공동체 회복 관련 지원

감사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기관별 조사과제 - 경찰(1)

신재운 변호사

2023. 10. 23. (월)

경찰(1) - 추가조사과제 순서

조사과제 1

경찰청장의 용인될 수 없는 무능과 무책임

조사과제 2

참사전·후 서울경찰청장의 대응은 적절했나

조사과제 3

참사 초기, 용산경찰서장은 왜 녹장대응을 하고 있었나

기존 조사 - 특수본 수사결과

-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법령상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로서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고, 서울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경찰청장이 이태원 헬러원 다중운집행사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인 보고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예견가능성 인정 어려움
-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찰청장 불입건 결정

경찰의 임무, 경찰의 사무

경찰법 제14조(경찰청장)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으로 한정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경찰청장은 이태원 헬러원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을 보고받은 적이 없나?

- 다중인파에 따른 사고를 가정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한 적 없고, 이태원 사고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사전에 서울경찰청이나 용산경찰서로부터 위험성, 대책 수립 필요성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제1차 기관보고(2022. 12. 27.) 경찰청)
- 그러나 경찰청 정보국은 2022. 9. 경 서울청을 비롯한 각 지방청 정보부에 ‘가을축제, 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 위험요인’ 제목의 SRI (보고서) 하 달하였고, 용산경찰서 정보과는 2022. 10. 4. ‘이태원 헬러원데이 축제’도 포함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신함.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는 국가경찰사무에 포함됨.
- 그러나 경찰청장의 불입건으로 인해 경찰청장의 지휘권 행사 태만과 참사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음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경찰청장이 핼러윈데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인파사고의 위험성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받거나 대책을 세운적이 있는지 여부
2. 경찰청장이 이번 참사 전후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의 지휘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3. 경찰청장의 참사 당일 시간대 별 행적
4. 경찰청장의 당일 행적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위반 여부

기존 조사 - 특수본 수사 결과

-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 운집을 인식했으나 정보, 경비 기능에 대한 사전 대책 미수립
- 112 신고 부실 처리, 상황 관리 미흡
- 용산경찰서장 관리감독 소홀
-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증거인멸교사 (송치)
- ➔당시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인사과장,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 각 업무상과실치사상(불구속 송치)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제1차 기관보고(2022. 12. 27.) 서울청에서 작성된 보고서(헬러원데이 분위기 및 부담요인)에 따르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경찰이 지자체와 소방당국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서울청장이 보고를 받았으나 서울시, 소방에 협조 요청한 바 없음이 확인됨
- 제1차 기관보고(2022. 12. 27.) 퇴근하면서 이태원 인파 운집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
- 112 신고가 여러 건 같은 장소에서 들어왔으나 경비대 파견 없었음
- 참사 당일 22시 18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공동대응 요청하였으나 인지 못함
- 상황3팀장(상황실 실질적 책임자)는 22시 59분, 서울청장은 23시 36분이 되어야 상황 인지 주장

기존 조사 - 공판

- 서울경찰청 정보부, 헬러윈데이 인파운집 관련 사전 보고서를 2022. 10. 14.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하였음
- 서울경찰청장은 2022. 10. 17., 2022. 10. 24. 2차례 화상회의로 서울청 각부 부장, 산하 경찰서장에게 인파 집중 대책 마련 지시했으나, 이후 인파 관련 대책 수립 여부 미확인
- 참사 당일 오전에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금일 가장 혼잡 예상’ 메시지, 퇴근 후 21시 37, 48분경 홍보담당관으로부터 두 차례 헬러윈 인파 운집 관련 보고 받고도 지휘 감독권 불행사
- 당시 112상황3팀장은 당일 집중 업무가 헬러윈데이 축제 안전관리 업무였으나 ‘21시 10분’ 경찰 인력 배치 요청’ 종결 건을 확인하지 않고 미조치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서울경찰청의 사전 예방대비 내용

- 서울경찰청장이 사전에 헬러원데이 관련 정보보고서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화상회의에서 인파 운집 대비 안전대책 관련 논의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 논의 내용
- 서울경찰청이 인파 운집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 마련하지 않은 이유
-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전날과 당일 인파 운집과 관련하여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점, 그 내용

2. 예년과 달리 인파 관리 목적으로 경비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사유

- 서울경찰청장이 경찰관기동대의 지원근무 또는 비상근무 지시가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이유
- 경비기동대 미배치를 지시하거나 집회 동원을 지시한 별도의 책임자가 있는지 여부, 그 책임자가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경위와 그 이유
- 서울경찰청장이 경비기동대 미배치에 관하여 논의 또는 승인을 하였는지 여부

조사과제 주요 내용

3. 이태원 현장 인력 동원 및 배치 등 현장 대응 부실

-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 내 분석대응반 참사 관련 인지 및 긴급성 분석 내용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3팀장이 참사 당일 인지한 정보 및 조치 내용

-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의 정확한 인식, 보고, 대응 시점

4.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및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의 기소 지연 사유

기존 조사 - 특수본 수사 결과

- 헬러윈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예상했음에도 인파 관련 대책 미수립
 - 사고 전후로 112 신고 처리 및 대응 부실
 - 현장 지휘 부재, 관리감독 미흡
 - 허위 상황 보고서 작성
- 당시 용산경찰서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송치)
- 당시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 업무상과실치사상 (송치)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당일 참사 현장의 경찰 인력 배치 및 활동 내역 미확인
- 경비기동대 요청사실에 관하여 용산경찰서장/112운영지원팀장의 엇갈린 진술
- 당시 112상황실장은 도로 인파를 인도 위로 올리도록 지시하여 혼잡 가중
-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20시 50분부터 112상황실장과 통화 시도, 22시 19분부터 무전, 22시 32분경 112상황실장과 통화, 22시 35분경 가용경력 전부 보내라 무전 지시했으나, 23시경 상황 인지했다고 주장

기존 조사 - 공판

- 2020년 당시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작성 “2020년 ‘핼러윈데이’ 종합치안대책”에 “압사” 위험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보고서 확인됨
- 2022년에는 코로나 집합금지 해제로 인한 상황적 특수성이 있었음에도 치안대책 상 “압사” 관련 내용 부재
- 2020년, 2021년 당시는 코로나 유행 시기- 2022년은 3년만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인파 몰릴 것 예측 가능했음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이임재(당시 용산경찰서장) 관련

1-1. 정보 및 경비계획이 누락된 종합치안대책이 작성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수정, 보완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

1-2. 예년과 달리 경비기동대 배치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 이태원 지역의 인파관리를 비롯한 질서유지 관련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

1-3. 참사 당일 20시 30분부터 무전을 수신하였음에도 즉각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

1-4. 인파 위험성에 관한 최초 상황 인지 시점

1-5. 11기동대의 출동 지시가 지체된 이유

1-6. 핼러윈데이 사전 대책 회의에서 마약 단속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업무일지 상 인파 관리가 아닌 성범죄와 마약단속을 중점으로 고려한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과제 주요 내용

2. 당시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관련

- 2-1. 다수 신고, 특히 코드제로에 관한 용산서 자서망 무전지령이 누락된 이유
- 2-2. 교통기동대 요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
- 2-3. 112신고 건(12건)에 대하여 일부만 출동이 이루어진 이유

3. 기타

- 3-1. 용산경찰서의 2020년 이전 및 참사 당일 경찰 배치 내역
- 3-2. 과거 이태원 헬러윈데이 관련 신고 내역에 인파 운집 관련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기관별 조사과제 - 경찰 (2)

전수진 미국변호사

2023. 10. 23. (월)

경찰(2) - 추가조사과제 순서

조사과제 4

참사 당일 정보관 파견하지 않은 이유

조사과제 5

경찰청장/서울청장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조사과제 6

서울청/경찰청에게도 보고되었는지 여부

조사과제 7

정보보고서 삭제 이유는 조치 미흡을 은폐하고자?

조사과제 8

서울경찰청장이 사전에 지시한 내용

조사과제 9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는 대비하지 않았나

조사과제 10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관련성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허위답변) 핼러윈 기간에 정보관을 이태원 현장에 파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사실

“17년부터 코로나 기간 방역을 제외하고 핼러윈 관련 정보관이 배치된 바가 없음”

- 23명의 정보관을 집회·시위에만 배치한 사실 - 이태원 핼러윈 축제현장에는 배치하지 않음.

“당일 진보단체·보수단체의 큰 집회가 있어 집회·시위 현장에 정보관을 많이 배치하였다”

기존 조사 - 공판

- **코로나 기간 전에도 정보관 파견 정황**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정보관을 파견함”

- **용산서 정보과 과장이 정보관 파견을 막은 정황**

“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헬러윈 축제에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보고서) 누가 쓰라고 했나. 주말이고 하니까 집회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정보관이 축제에 나가서 할게 뭐 있나. 이건 주체(주최)도 없고 그냥 크리스마스 같은 거다. 누가 크리스마스 때 정보관이 나가나, 그냥 자료만 올리고 집회에 나와야 된다.”

기존 조사 - 공판

- 정보관이 할러윈 축제에 파견되었을 때 이점
- 무전을 이용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비 가능
- 용산경찰서 관내 대규모 축제에는 항상 정보관이 배치되었음
- 할러윈 축제는 관내 주요 조치 행사(경찰청, 서울경찰청 동일)
“2017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 매년 <할러윈 대책>이라는 경찰서 대책서가 따로 존재”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매해 용산경찰서 관내 축제 당일 파견된 정보관 현황
2. 2022년 핼러윈 기간에 정보관들이 집회·시위에 파견된 이유
3. 경찰청/서울청/용산서가 집회·시위 위주로 경력 배치를 사전에 계획했는지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2022. 10. 14. 김광호 서울청장은 서울경찰청 정보부의 자체 보고서를 통해 **할러윈 축제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인지함**
- 그런데도 **유관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음**

- ➡ **확인한 보고서는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증언**
- ➡ **다중인파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지만, 마약 등 범죄예방 중심으로 대책 세워**

기존 조사 - 공판

- 경찰청 정보라인의 보고체계에 따르면 정보보고서 중 완결된 형태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경찰청장 김광호에게 보고된 정황 - 이후 김광호의 인파 대비 지시 정황

“2022. 10. 14. 경 <할러윈 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해당 보고서는 할러윈 데이의 안전사고 위험성과 그에 대한 대비 필요성에 관한 내용”

“서울청장 김광호는 두 번의 화상 회의를 통해 각부 부장 및 산하 경찰서장들에게 할러윈 데이의 인파 집중 위험성에 대해 대비할 것을 지시함.”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의 SRI 하달 및 보고체계와 관련된 실무진 명단
2.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된 보고서가 경찰청장에게도 보고되었는지 여부
3. 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된 보고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한 사실관계
4. 최종 완결된 정보 보고서는 대통령실에도 보고되었는지 여부
“공판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라인에서 작성한 정책보고서는 대통령실에도 보고된다”는
증언 확보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허위답변) 용산경찰서 작성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부 실무자만 열람, 경찰청 본청에 보고한 바 없다는 증언
- (답변회피) 대통령실로 보고된 정책 참고자료인가?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
- 수사 관련 사항을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요구에 거부
- 서울경찰청이 마약 등 범죄예방 중심으로 대책을 세웠다는 의혹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함

기존 조사 - 공판

-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SRI 하달 사항 및 회신보고서를 통해서 서울청과 경찰청에 보고된 정황이 드러남

“(서울청에서 경찰청으로 보고) 서울청 정보분석과 정보관 000은 2022. 10. 4. 용산경찰서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취합하여 2022. 10. 5. 경찰청 정보분석과 정보관 ***에게 회신 보고함.”

“(보고를 바탕으로 경찰청에서 정책참고자료 작성 및 지휘부에 보고) 경찰청 정보분석과 정보관 ***은 서울청 000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정책참고자료 작성. 경찰청 정보분석과장 ### 등 경찰청 지휘부에 순차 보고”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용산서가 작성한 SRI 회신 보고서를 확인한 실무진 확인
2. 경찰청 정보관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하였는지 확인 필요 - 보고한 실제 실무진 확보
3.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정보라인을 통해 대통령실에도 보고된 것인지 확인 필요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정보보고서 삭제·은폐) 수사 증으로 조치 미흡과의 연관관계를 밝힐 수 없음
- (답변회피) 정보보고서의 인파 보고 10만 명을 실제로 대비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회피
- 용산서 정보과 실무진들이 간부들로부터 삭제지시를 받은 정황
- 이후 공판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남

기존 조사 - 공판

- 서울경찰청 前 정보부장인 박성민의 보고서 삭제 지시
→ 용산경찰서 前 정보과장인 김진호가 4건 삭제 지시
- 박성민은 사고 책임회피를 위해 구체적으로 여론 조작을 지시
공공안녕이 최우선 과제인 정보 경찰관이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차단하고자 경찰 만능주의 풍조에 대비할 여론 조성 지시

“경찰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 발생 - 주최측, 자치단체의 안전불감증으로 귀책될 경우 → 주최측, 자치단체 책임 강화로 이어져 경찰부담 완화 - 적극적인 수사 드라이브로 주최측, 자치단체 책임이 부각되도록 조치 필요”

이는 2022. 10. 30. 박성민의 메모로 참사 바로 다음날에 작성된 것임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사전에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도 보고되었는데도
헬러원 인파 대비를 하지 않은 이유
2. 관련 정보보고서를 반드시 삭제해야만 했던 이유 ★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정보보고서가 서울청장에게 보고되어 10월 14일에 헬러윈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지만, 인파 대비보다는 범죄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둔 정황

“10월 17일, 24일 지시는 10월 14일 정보보고서를 토대로 지시를 한 것이고, 정보보고서는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였음. 예방 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1개 중대 여유가 있으면 배치하려다가 대체인력으로 형사들을 대거 배치한 것임.”

기존 조사 - 공판

- 서울청 각부 간부들과 경찰서장들에게 인파 집중 위험성을 대비할 것을 지시한 화상회의를 열었음

“올해는 3년 만의 거리두기 해제로 이태원, 홍대,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 부서, 관서는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촘촘한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

“다시 한번 인파 집중 위험성에 대해 대비할 것을 지시”

2022.10.14.
서울청 정보
부의 「핼러
윈 데 이
(10.31.)을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
인」 보고서
작성 및 보
고1). 이 보
고서는 피고
인 박성민과
서울청장 김
광호에 보고
됨2).

2022.10.17.
9:00경
김광호 서울
청장이 경찰
서장과 화상
회의5)

2022.10.24.
9:00경
김광호 서울
청장이 경찰
서장과 화상
회의4)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서울청장에게 보고된 정보보고서 실제 문건 확보
2. 서울청장에게 보고된 헬러윈 대비 문건에 인파 대비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에 치중한 이유
3. 서울청장이 실제로 지시한 내용 - 정보보고서 보고 이후 열린 두 번의 화상회의 기록 및 영상녹화자료가 있는지 확인, 화상 회의 참석자 목록 및 서울청장의 지시 내용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주최자가 없는 행사 대비에 대한 모호한 답변

“주최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경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그것은 맞으나 경우는 다양함”

“이번 참사가 주최가 불분명해서, 일선 경찰들의 판단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렇지는 않으나, 인파 관리는 특정 시간과 지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비 대책 세우는 것임”

기존 조사 - 공판

- 용산경찰서 정보과는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역 축제의 인파 밀집 사고 위험에 대비해옴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하달된 SRI/용산경찰서의 SRI 회신 보고서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위험 요인>

“주최자가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축제, 서울 거리예술 축제, 이태원 지구촌 축제, 서울 뮤직페스티벌과 병렬적으로, 주최자가 없는 이태원 할러윈 데이 축제도 기재됨.”

- 최근 공판에서도 경찰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경찰이 예방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함
- 이태원 할러윈 축제는 매년 용산경찰서의 관내 주요 조치 행사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용산경찰서가 작성한 정보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인파 위험을 보고함. 또한 매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용산경찰서의 관내 주요 조치 행사였음. - 용산경찰서가 2022년에는 이태원 축제의 인파 밀집 사고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이유
2. 최근 5년간 경찰의 주최자 있는 행사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인파 대비 내용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할러윈 축제 당일 집회·시위에 집중된 정황은 밝혀졌지만, 대통령실 이전과의 관련성을 부인함**

“대통령실이 옮겨 오면서 집회의 동선이 달려졌지 않은지?”

“달라졌음”

“대통령실 이전이 안 됐더라면 당연히 정보과 형사들이 현장에 있지 않겠는지?”

“미처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음”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용산서의 업무가 과중해짐. 용산서 정원을 증가해 달라고 서울청에 요청한 적 있는지?”

“있음”

기존 조사 - 공판

- 이태원 지역 담당 정보관이 헬러윈 축제로 파견해 달라고 하자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진호가 거부함 - 집회·시위 현장에 집중할 것을 지시함
- 김희석이 지역정보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 - 집회·시위에 집중된 업무

“용산서는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지역정보 활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용산서 정보과는 예전과 다르다. 지역 정보 활동은 필요 없다”

- 축제 이전 사전 대비 간담회 참석 불가 - 집회·시위 관리

“집회 관리로 간담회에 뒤늦게 참석” “간담회 내용 숙지 불가”

기존 조사 - 공판

- 용산 집무실 이전 이후 용산서 경찰관의 업무 과중
- 이태원 참사 바로 다음날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박성민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사고 책임과 연결된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할 여론 조성 방안을 기획함
 - “사고책임 관련 검토 - 경찰이 경력배치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으로 흐를 경우 → 서울청 대비 미흡, 주말 대규모 집회시위 대응으로 경력 부족 등 부각 → 용산 이전이 근본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고, 앞으로 지역행사, 축제 등에 더 많은 경력배치 문제로 연결되어 수익자 부담원칙, 경찰 만능주의 극복에 악영향”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경찰이 집회·시위에 집중한 이유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있는지
2. 용산경찰서 및 서울경찰청의 헬러윈 데이 경력 배치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달라졌는지 여부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 [국정조사] 허위답변, 답변회피, 국회 자료제출요구 거부, 명확한 사실관계파악 불가, 세부 사실관계의 누락, 예정보다 짧은 국정조사 기간
- [공판] 공소사실 관련 쟁점에만 집중.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능
- 조사과제는 알려진 정황을 근거로 유추하여 정리한 것.

감사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기관별 조사과제 – 소방조직, 보건복지부(응급의료)

천운석 변호사

2023. 10. 23. (월)

소방조직 등 - 추가조사과제 순서

조사과제 1

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 오류 문제

조사과제 2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

조사과제 3

인력배치, 차량통제, 소방 대응단계 발령이 늦은 이유

조사과제 4

소방인력의 장비 사용 문제

조사과제 5

구급차 이송 및 사상자 기록, 사망자 판정 관련 각종 문제

조사과제 6

응급의료팀의 현장 파견 및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조사과제 7

용산소방서 관계자들에 대한 후속조치 확인 필요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 국정조사

- 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 오류에 관한 국정조사 자체가 미미함
- 소방 구급대원(또는 구급차량)의 바디캠 촬영 영상은 ‘자동’으로 방재 센터 등 유관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것인지 그 가부를 국정조사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음(서울시는 국정조사에서 바디캠 촬영 영상을 ‘송출’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함)
- 소방 구급대원(또는 구급차량)의 바디캠 영상이 촬영은 되었는데, ‘송출’ 시스템이 오류였던 것인지, 참사 당시 증계 차량을 통한 영상 촬영 및 송출 등 어떤 방법으로도 현장 영상을 송출하기 어려웠던 것인지 확인된 바 없음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소방대원(또는 구급차량) 바디캠 촬영 영상이 ‘자동’으로 방재센터 등 유관 기관에 송출되는지, 유관 기관의 범위
2. 위 ‘자동’시스템 작동하지 않을 시 직접 영상을 ‘송출’하여야 하는지, 당일 휴대전화 사용 폭주로 인한 ‘송출’ 시스템 장애를 미리 예상할 수 없었는지, 기존 영상 송출 시스템 오류에 관한 기록(어느 정도 인파가 몰릴 때 송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지, 통신 장애 시 어떠한 방식으로 현장 상황 전파를 하여야 하는지 매뉴얼)
3. 촬영 중계 차량 요청은 언제 한 것인지, 촬영 중계 차량마저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이유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 국정 조사

- 재난통신망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 없음
- 재난안전기관(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은 재난관리에 있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하고 매년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 참사 당일 재난안전기관 중 어느 곳도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음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참사 이전 재난안전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현황(예산, 기기 수 등), 활용 계획,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
2. **참사 당일 재난안전기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내역 일체 확인**

기존 조사 - 특수본 수사

- 22시 19분 골목 아래쪽(전면부) 경찰관 도착, 구조 개시
22시 30분 골목 아래쪽 119구조대 도착, 구조 개시
- 22시 32분 골목 위쪽(후면부) 경찰관 도착, 구조 개시
22시 37분 골목 위쪽 119구조대 도착, 구조 개시
- 경찰과 소방은 끼임으로 인한 압력이 덜한 골목 위쪽부터 끼인 사람들을 구조하며 순차적으로 심폐소생술 실시, 23시 22분 경 끼임 해소가 있었다고 보고함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용산소방서장, 119대원 전면부 도착 시간 22시 31분, 후면부 도착 시간 22시 37분이고 당시 생존자 많았음, 대응 단계는 1단계이든 3단계이든 현장 상황에 따라 현장 지휘관인 용산소방서장이 바로 할 수 있음에도 대응 단계 빠르게 격상하면서 대처하지 않음
- 유해진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원은 현장에서 계속하여 경찰 인력 지원 요청하였으나(소방 무전 녹취록 살펴보면 경찰 인력 지원 요청 수없이 반복) 현장에 있던 경찰은 2명으로 기억하며 현장 통제는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함, 23시 33분 경찰 기동대 1대만 현장 도착
- **이송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 접촉 시간이 다음날인 경우가 더 많은데 이에 대해서 밝혀진 사실 없음(10월 29일 23시경 전후로 구조된 사람이 더 적음)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 소방이 첫 구조를 시작한 22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7시 까지 기존 국정조사만으로는 현장 상황 파악 자체가 어려움
- 차량통제, 인력배치만 제대로 했어도 희생자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등 현장 상황 전체 확인할 필요 있음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소방 구급차 바디캠, CCTV를 통해 2022. 10. 29. 22시부터 2022. 10. 30. 7시 까지 현장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확인
2.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
3. 최초 구조 시간, 도로통제 시간, 구조 종료 시간, 구급인력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 투입되었고 어떤 구급활동을 하였는지(생존자와 구조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소방과 경찰 인력이 매우 적었고 cpr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4. 신고 접수 시부터 대응 3단계 발령까지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된 이유, 판단이 늦어진 경과와 그 이유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 국정조사

- 소방인력이 어떤 장비를 구비하고 현장에 출동했는지, 어떤 기계를 사용했는지 조사된 바 없고 기계식 가슴 압박장치의 경우 세 개 구급대에서만 활용한 것으로 확인됨
- 소방인력의 장비 구비, 장비 사용, 조치에 관하여 조사된 바 없음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현장 출동 시 약물, 제세동기 장치 제대로 구비하였는지, 장비 등 적절히 사용하였는지
2. (제대로 된 장비 없이 출동하였다면) 경과 및 그 이유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경상자 이송 전에 사망자가 먼저 이송되는 등 이송 과정 문제 있었음, 참사 현장과 순천향병원이 차로 5분 거리인데 사망자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응급환자를 21km 강동경희대병원, 11km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한 사실 있음
- 순천향병원에는 60여 명 의료진이 대기 중이었고 지연환자, 사망자가 아닌 환자를 보내달라고 계속하여 요청함, 무전 내용을 보면 소방서장이 ‘사망자는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지시함
- cpr이 끝난 시간 자료 없음, 중증환자 이송은 01:06까지 진행하고 01:45경에도 DMAT팀(재난의료지원팀) 상당수가 현장에 있었음, 사망 판정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구급지도 의사가 원격으로 한 것임, **이송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 접촉 시간이 다음날인 경우가 더 많은데 이에 대해서 밝혀진 사실 없음(10월 29일 23시경 전후로 구조된 사람이 더 적음)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소사 필요성 - 국성 조사

- 피해자들 이송과정 추적 필요, 특히 여러 곳을 거쳐서 이동한 경우 희생자, 생존자들이 시간대별로 받았던 응급조치를 정리할 필요 있음(시간대별 현장 응급의료 상황 정리)
- 긴급환자와 응급환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 병원 이송 순서를 결정했는지, 어떤 기구와 어떤 기준으로 응급조치 중단결정을 내린 것인지, 중증분류체계나 매뉴얼 상으로 실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원격 사망 판단의 적법성 논의 필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구급지도 의사가 사망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소방이 현장에서 사망자의 신체활동수치, 심전도수치 등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등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소방청에서 파악한 참사 현장 주변 의료기관 현황
2. 이송 요청에 응한 의료기관의 명칭과 처치 가능하다고 답변한 환자 수
3. 이송 요청에 불응한 의료기관의 명칭과 각 의료기관에서 밝힌 사유
4. 위 관련 수발신 문서 및 보고내역 일체 확보 필요
5. 당일 중앙응급의료센터(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상정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이유와 문제
6. 왜 순천향병원으로 사망자가 다수 이송되었는지, 관련인의 판단 근거와 세부 경위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재난의료지원팀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사상자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응급환자 병원 이송 등의 역할을 담당함, 보건소 신속대응반 2개팀, 서울·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14개 재난거점병원의 15개 의료지원팀(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 SMICUI 2개팀 별도)이 출동하였음
- 재난의료지원팀 차량 일지를 보면 현장응급의료소의 책임자를 찾고 임무 배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응급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현장 지휘체계, 권한 위임 문제 및 현장에서 소방청과 재난의료지원팀의 유기적 협력체계 미비 등으로 사망자 분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자가 더욱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 국정조사

- 응급의료를 위하여 현장으로 출동하였던 신속대응반과 의료지원센터 등 개수 정도만 국정조사 언급되었고, 출동 시각과 도착 시간, 인원 등 세부 내역은 확인된 바 없음, 출동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응급의료를 위하여 현장으로 출동하였던 신속대응반과 의료지원센터 등 출동 과정
2. 출동 후 현장에 도착하여 행해졌던 구체적인 구조 행위들과 각 유닛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세부적 확인 필요
3. 응급의료 관련 기관인 소방, 보건복지부, 용산구(보건소) 등 기관들이 현장에서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정과 소통을 위한 조정, 협의가 부재하였던 이유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 국성 조사

- 특수본은 2022. 12. 27.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검사는 2022. 12. 28. 보완 요구,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송치됨
- 이외 관련자 4명 소방안전근무자임에도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이탈, 소방안전대책 책임관임에도 근무자 관리 및 감독 미실시, 119 신고 접수 소홀로 임의 종결하는 등 문제로 후속조치 하기로 하였는데 수사 진행상황, 후속조치 확인 필요

감사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기관별 조사과제 - 행정안전부

임한결 변호사

2023. 10. 23. (월)

행정안전부 - 추가조사과제 순서

조사과제 1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총책임자로서 참사 예방·대비에 관하여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조사과제 2

“상황관리 철저”라는 추상적 지시 외에 참사 발생 전·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였나

기존 조사 - 특수본 수사

- 이상민 장관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각하 결정
- 구체적 주의의무 부정: 늦게 알았기 때문에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결론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일일상황관리(언론보도 주요사항, 해외 재난)
- 다중밀집 인파사고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존재
-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 지자체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음

기존 조사 - 탄핵심판

- 탄핵심판 기각의 주된 논거: 재난안전법 위반 X
-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재난안전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단계에서의 의무는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 [국정조사] 행안부와 상황실에서 만든 5쪽 분량 보고서에 불과
- [특수본 수사, 탄핵심판] 재난안전법상 의무규정의 형해화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재난 예방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2. 재난안전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예방조치를 다하였는지
3. 행정안전부 내 기관의 역할과 기능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참사 인지 시점: 22:38경
- 대응: 상황파악, 상황관리 철저 지시

기존 조사 - 탄핵심판

- 중대본, 중수본 가동하지 않아도 역할 수행이 있었다고 판단
- 행정안전부가 대응과 수습의 중심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책임을 맡게된 시점이 불명확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 수백 명이 심정지로 인한 긴급상황에서 국가재난관리체계로는 소방의 현장지휘와 긴급구제통제단이 가동된 것이 전부
- 참사 발생 시로부터 3시간 15분이 지난 30일 02:30경 비로소 대통령의 지시로 중대본이 구성된 것이 행안부의 대응
- 참사 당시 행안부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분석의 부재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긴급구조통제단장에 대한 심층조사.
2. 상황실 주요 조치사항의 적절성.
3.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4.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이유

감사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기관별 조사과제 - 서울특별시

백민 변호사
2023. 10. 23. (월)

서울특별시 - 추가조사과제 순서

조사과제 1

인파 운집에 따른 참사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거나 대처하는 데 실패한 이유

조사과제 2

참사 대응 과정에서 무엇을 하였나

조사과제 3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는 왜 안 되었나,
만일 됐다면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용산구와 협의를 하였는지
 -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대책을 논의함
 - 2022년 할러윈 축제 관련 협조요청을 받거나 안전대책을 협의한 적은 없음
- 다수 인파 운집을 예상한 서울시 차원 대비 내용
 -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 특별운송계획, 용산소방서에서 소방대응계획 수립
 - 서울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할러윈데이 대비 공문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 서울시는 다중인파 운집을 예상하지 못했다?
 - 예년과 다르게 2022년 용산구와 안전대책 협의하지 않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이유
 - 서울시 안전총괄실 등 재난안전담당부서의 안전대책 마련 내용이 상부에 보고되었는지
 -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거쳐 헬러윈데이 대비 공문을 보고받았다면, 언제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추가조사과제

1. 서울시 내부 직원들의 사전 인식 및 재난 징후 관련 보고 여부
2. 자치경찰위원회의 핼러윈데이 대비 공문의 전달, 보고 여부
3. 서울시가 2016~2022년 사이에 핼러윈데이를 대비한 사실이 있는지
 - 서울시의 지난 7년간 예산 사용, 집행 내역 / 핼러윈데이 관련 생산한 문서 일체 / 치안, 안전 등 대책 수립 내용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서울시 조례에서는 재난안전관리책임자로서 구체적 주의의무 (재난대비, 재난상황실 운영, 통행제한, 응급조치), 재난안전 사고 발생시 5분 이내에 시장단에 보고하도록 명시
 - 참사 당일 행정1,2부시장은 30분 지나서 상황 인지
 - 현장 도착시간이 늦어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을 지휘
- 재난안전통신망 사용하지 않고, SNS로 상황을 전파함
- 비상연락망 가동 안 됨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최초 상황 보고를 받은 22시 26분부터 대응내역 제출
 - 실제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무엇이었는지 확인 안 됨
 - 재난수습과 무관한 외부인 등의 출입통제, 교통통제,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등 이행되었는지 확인 안 됨
-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선조치 후보고로 충분하였다?
 -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되지 않은 문제
 - 최근 5년간 재난대비훈련,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사실이 없음
 - 애초에 작동할 수 없었던 것 아닌지

추가조사과제

1. 재난안전상황실(당직근무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 참사 인지한 22:26경부터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 내역
 - 당직근무수칙, 지휘계통 보고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매뉴얼
2. 시장단,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유관 부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 초기 상황전파를 받은 범위, 시장단이 제외된 경위
 - 22:53경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한 내역
 - 응급조치로서 교통통제, 재난문자 송출 등을 적시에 하지 못한 경위
3. 재난대비 매뉴얼 숙달훈련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 여부(서울시의 훈련 내역)
 - 다른 지자체, 행안부, 소방, 경찰 등과 연계 훈련을 한 적 있는지
4. 재난안전통신망, 비상통신망, 유관기관 연락체계 등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기존 조사 - 특수본 및 검찰 수사

■ 특수본

- 서울교통공사 소속 이태원 역장(송은영), 동묘영업사업소장(이권수)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

■ 검찰

- 기관 간 진술이 상반되는 것은 사실이나,
- 서울교통공사 측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무정차 요청에 관한 사전 공문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이태원역장

- 참사 발생 3일 전 용산경찰서의 '이태원관광특구 상인연합회간담회' 참석하여 기관 간 협조사항 등 논의한 사실이 있음
- 당시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논의 포함(경찰, 상인연합회 측)

■ 용산경찰서

- 참사 당일 2차례(21:38경 및 23:13경) 이태원역장에게 무정차 운행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정상 운영(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 이태원역장은 참사 당일 1차례(23:13경) 요청을 받았으며, 당시 이태원역에 승차(귀가)인원이 하차인원보다 많아 무정차를 실시하지 않았음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서울교통공사

- 무정차 통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외부요인(축제, 시위 등)에 의한 무정차 통과는 관례상 사전협의 및 공식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해 실시한다고 보고함

【서울교통공사 무정차 통과 관련 규정】

· 관제업무내규 제62조(무정차 통과조치)

- 운전관제는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협의하여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 시킬 수 있다.

·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운영예규(무정차 통과 조치)

- 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안전이 우려될 경우 상황을종합관제센터에서 보고하고 열차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 서울교통공사의 2019~2022년 특별수송계획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헬러윈 축제 대비하여 무정차 여부 등을 검토하였음
 - 2022년도 특별수송계획에는 '2021년에도 헬러윈 기간에 짧은 시간(4h) 동안 승객 폭주, 하차 인원은 20시 이후 최고조', 참사일 예상 승객수는 '2019년도 수준(96,845명)'으로 기재
 - 그러나 2019년과 달리 인접역 분산하차 유도과 무정차 안내 방송 문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음
 - 2022년에 무정차통과 계획을 실시하지 않은 경위, 이유를 조사할 필요 있음
- 서울특별시는 참사 20여일 전 개최된 2022년 세계불꽃축제나 제야의 종타종행사 당시 '교통안전대책 협조요청' 공문 발송하여 무정차 통과 계획 수립함
 - 이태원 헬러윈 축제 기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 조사되어야 함

추가조사과제

1. 사전계획 수립 및 예방조치 시행 관련

- 이전과 달리 무정차 통과에 관한 사전계획을 수립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2. 무정차 통과 요청에 관한 공방 관련

- 2022. 10. 26. 용산경찰서 간담회에서 상가변영회와 경찰이 제기한 내용
- 참사 당일 경찰이 이태원역장에게 2차례 무정차 통과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3. 이태원역장의 참사에 관한 인지가능성

- 참사 당일 관제실에 보고한 내용, 어떤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통과 검토 지시 이행여부

- 참사 당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서울교통공사 김석호 영업본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동묘영업사업소장이 이를 실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기관별 조사과제 - 용산구

최종연 변호사

2023. 10. 23. (월)

용산구 - 추가조사과제 순서

조사과제 1

헬러원 데이 인파 밀집을 예견하고도
왜 안전대책에 소홀했나

조사과제 2

초기 재난 대응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조사과제 3

참사 후 임시영안소 운영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기존 조사 - 특수본 수사 (1)

- ‘이태원 지구촌 축제’(2022. 10. 15. - 16.)
용산구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 관객 과밀 상황을 수시 파악
‘관람객이 몰릴 경우를 대비’, 안전요원 출동 및 혼잡상황 정리
구청 직원 1,078명, 안전관리요원 362명, 경찰 109명 투입
- [2022 용산구 안전관리계획] : 10월 할러윈 데이를 ‘재난취약시기’로 규정
- 2022. 10. 28. 14:30 비서실 내 인파 관련 언론보도 공유

기존 조사 - 특수본 수사 (2)

- 유승재 부구청장 : 2020-2021년 핼러윈 대책 수립 시행
- 2022. 10. 25. 확대간부회의, 10. 27. 긴급대책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및 협조요청지시
- 박희영 용산구청장 : “이태원은 핼러윈으로 난리라 신경쓰이기도 하
구요” / “인파가 많이 모이는데 걱정이 된다. 계속 신경쓰고 있겠
다.”
- 용산구 중간간부들의 인파 밀집 관련 사진 및 언론보도 게시
- 참사 당일 현장 순찰 상황 공유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할러윈 데이 사전 대책회의에서 인파 관련 사전대책 전무**
- **서울교통공사에 전도 위험 안전사고 강조한 협조공문 발송**
- 인파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스스로는 별도 조치 불이행
- **2022. 10. 26. 유관기관 회의에서 인파 밀집을 전제로 한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환풍구 추락사 예방 등 대책 논의**
- **박희영 구청장 : 2차 청문회에서 “인파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음”이라고 답변.**

기존 조사 - 공판

- 박희영 구청장 등 피고인들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인파가 운집할 줄 몰랐다”
- 제1회 공판 참사 당일 당직사령의 증인신문
 - 당직근무자들이 당일 19~20시 경찰관들과 교통정리 수행
 - 20:40경 현장 순찰 복귀 후 당직사령에게 현장 상황 보고
 - 당직실 근무자도 “이태원 인도 인파 밀집, 교행이 힘들다”

결국 참사 발생 1시간 30분 전에는 인파 밀집 상황을 당직실 인지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 **참사 당일 비상대기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현장 인식 및 보고 여부는 조사되었으나,**
- **용산구청장 등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을 세우지 아니한 이유는 여전히 불명확함.**
-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인파 예측을 일관되게 부인.**
- **2022년 이전의 용산구청 차원 헬러윈 데이에 관한 상황인식과 인파관리 필요성 여부가 인수인계되었는지 불명확함.**

기존 조사 - 특수본 수사 (1)

- 참사 당일 20:30 박희영 용산구청장 및 김재현 비서실장
 - '이태원 차도, 인도에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 민원전화를 받고 현장출동을 준비중인 당직사령에게 전단지 수거 지시
 - 당직자 2명을 차출, 당직사령이 현장 순찰 포기
 - 당직실 운영 및 재난 관리·대응을 어렵게 하였음.
-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당일 22:51 상인연합회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22:59 참사 현장 도착

기존 조사 - 특수본 수사 (2)

- 용산구청 당직실의 참사 인지 경과

22:15 참사 발생

22:20 서울시 출동지령 자동상황전파

“골목에 사람들 무질서, 질서유지, 통제요청, 부상자”

22:29 서울소방방제센터 “사람들이 압사당하겠다고 신고”

22:53 행정안전부 “해밀턴호텔 골목 압사사고 발생”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용산구청 당직실은 22:29 서울시로부터 유선 전파를 받음
 - 당직자는 통화 기억이 없고(국정조사 출석 거부),
 - 당직사령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

기존 조사 - 공판

- 참사 당시 당직실에는 당직사령과 당직자 2명만 근무 중
- 22:20 서울소방본부 상황전파메시지는 수신처리만 함
- 당직사령은 용산구청장 비서실장이 “구청장 지시사항”을 이유로 전단지 수거 지시를 했다고 증언.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 [국정조사]
 - 당직실 외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안전재난과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의 참사 인지 경과는 조사 미비
 - 박희영 구청장이 22:51시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최초 인지 시점인지 의문, 이미 ‘골든 타임’이 경과한 시점.
- [공판]
 - 피고인들은 “당직실이 재난안전법상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 회피.
 - 당직실 전단지 수거 지시가 참사 예방/대응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 한계가 있음.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용산구 관계자들의 정확한 참사 인지 시점 관련 경위
 - 당직실 유관기관 통보 불구 상황관리 실패 사유, 22:51까지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참사 인지 여부, 지역 주민이 연락한 경위
2.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실의 운영 실태
 - 20시경 - 22:53경까지 당직자들 상황 인식 및 인파 정보 수신 여부
 - 재난안전법상 상시 재난안전상황실로서 기능할 수 있었는지
3. 참사 당일 용산구청 유관 부서 공무원들의 현장 출동 및 초동조치 여부
 - 최OO 안전재난과장의 비상 소집 권한 여부
4.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실태, 관내 안전사고 시 사용 이력, 훈련 이력
5. 참사 당일 삼각지역 일대 '전단지 수거 지시'의 상급 주체

기존 조사 - 국정조사

- 참사 익일 01시부터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 02시경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이 ‘사망자 임시 안치시설 지정’
- 02:30경부터 07:07경까지 구청 직원 80여 명, 모포 배치
- 참사 희생자 시신 최소 45구 이상이 임시 안치됨
- 이후 재차 다른 원거리 병원 영안실로 재이송, 유족 및 동행인에게 정보 공개 거부
- 임시영안소에 ‘신원 확인 중’ 이유로 유족 출입을 막고 시신 확인 거부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 원호로 다목적 체육관을 임시영안소로 운영하게 된 경위 및 운영의 주체, 과정에 관해 국정조사에서 조사 미흡.
- 이후 형사 공판에서도 공소사실 쟁점이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다루어지지 않음.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을 임시영안소로 사용하는 결정의 경위
- 그러한 결정의 적절성
2. 임시영안소 출입 통제 주체, 통제 결정의 경위, 당시 용산구의 역할
3. 임시영안소에서 시신을 타 지역 병원으로 재이송한 결정을 내린 주체 및 경과, 당시 용산구의 역할

감사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기관별 조사과제 - 피해자 지원

조인영 변호사

2023. 10. 23. (월)

피해자지원 - 추가조사과제 순서

조사과제 1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이 지연된 문제점

조사과제 2

유가족의 신원확인 및 시신인도 과정에서의 문제점

조사과제 3

참사 직후 유가족 지원의 문제점

조사과제 4

피해자지원체계의 문제점

조사과제 5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혐오표현으로 인한 2차
가해

기존 조사의 한계 및 필요성

- 최초 신원확인 은 2022. 10. 30. 00시 30분 강북삼성병원. 원효로다목적체육관, 순천향 병원 등 각 19개 장소에 191명 과학수사대가 출동하여 신원확인. **다목적체육관에 사망자 시신 임시 안치 시설 설치한 시각이 2시 29분이고, 07:07까지 운영.**
- 유가족들이 희생자가 안치된 병원의 위치 등 희생자의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시각은 **10월 30일 오후(12시 이후)**
- 당시 현장에서 희생자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소방, 경찰, 용산구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게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에게 이동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구급차 동승을 요청하거나 이송되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함. 그러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현장에서 희생자의 지인 및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거부 관련

- 참사 이후 희생자의 신원확인 및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시간대별로 어느 주체까지 보고받고 결정에 동의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2. 정확한 신원확인 시간 관련

3. 희생자 병원이송 결정 내용 및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연 과정 관련

-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따르면, 10월30일 00시 42분경 대통령 주재 최초 긴급 상황점검회의(국가위기관리센터). 서울시 기관보고서에 따르면, 30일 01시 33분 행정2부시장이 시민건강국장에게 “대규모 사망자 발생으로 시신안치 병원확보 지시(유선)”를 4차례 함.

기존 조사의 한계 및 필요성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이후 과수대원 200명 가량을 투입하여 신원확인을 하였음. 지문채취 후 병원에 시신을 이송하게 하였고, 유족분들께는 과수계장을 보내 검시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라 하였음.” 이라고 답한 바 있음.
- 희생자별로 검안과 검시가 통일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원에서 유가족들이 시신 인도 및 유류품 인계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의문과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소상히 설명하고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대해 답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설명한 바 없음.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검안과 검시의 정확한 내용 및 유가족에 대한 사후 통보 결정 이유

- 대검찰청 국정조사 보고에 따르면 검사 99명이 직접 검시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검시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시를 진행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임.

2. 경찰과 검찰의 부검 안내에서의 문제 : 부검 권유 및 마약 언급 관련

3. 희생자 유류품 인계 문제 관련

4.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경찰조사 및 진술서 작성 관련 문제

기존 조사의 한계 및 필요성

-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유가족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나 이러한 프로세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자료에 장례는 기본적으로 유족들 뜻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족의 의사를 물어보았는지”에 대해 “초기에 장례를 치르면서 한 분 한 분 여쭙어 볼 상황이 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음.
- 국정조사에서는 유가족 지원에 관한 계획 및 논의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유가족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하나의 쟁점으로 조사되지 않았음.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유가족 연락처 공유 거부

- 유가족 연락처 공유에 대한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결정이 어떤 주체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함.

2. 정부합동분향소 설치 관련

3. 명칭 사용 관련

- 참사 초기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명칭 사용 결정, 근조리본을 거꾸로 달아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음.

기존 조사의 한계 및 필요성

<재난 피해자 지원의 적정성>

- 피해자의 범위는 유가족, 생존자, 구조자, 목격자, 상인, 주민, 체류자 등 매우 광범위하며 그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주체들에게 필요한 지원의 내용을 조사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함.
- 재난 피해자 지원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지원에 있어서 수요 및 필요한 지원의 내용 조사, 지원계획 수립, 시행기관들에 대한 안내, 피해자들에 대한 안내 및 정보제공, 지원에 대한 통계 및 평가, 향후 개선방안 등의 절차를 통해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재난 피해자 지원이 적정했는지
2. 의료 및 재난심리지원이 적정했는지
3. 기타 유가족 지원이 적정했는지
4. 생존자 지원이 적정했는지
5.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이 적정했는지
6. 상인 등 공동체 회복 관련 지원이 적정했는지

기존 조사의 한계 및 필요성

1. 참사 초기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장, 국회의원 등은 참사 발생의 책임을 회피하고 참사의 원인을 희생자에게 돌리는 발언을 하였고, 유가족이 진실규명을 요구하자 유가족이 희생자의 죽음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모욕적 발언들을 지속함.
2. 녹사평역에 위패와 영정이 있는 시민 분향소가 차려진 후 보수 단체와 보수 유튜버들이 분향소 앞에서 유가족들을 향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야당이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음.

기존 조사의 한계 및 필요성

3.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차 가해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방안: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협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경찰 차원에서는 2차 가해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적인 현수막 게시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

4. 159번째 희생자의 경우 생존자로서 죽은 친구들을 모욕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없고, 피해자들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조사과제 주요 내용

1.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표현은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였으며, 어떤 추이로 전개되는지
2.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표현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처리, 진행되고 있는지(법원의 재판결과 포함)
3. 명예훼손 및 혐오표현으로 피해를 본 재난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방안은 무엇인지
4. 재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혐오표현은 어떻게 방지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